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1. 17.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2024. 3. 1.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사업자 선정 필요함.
- 나.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관리대행 함으로써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하수도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가. 하수도법 제19조의2
- 나.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3. 위탁내용

- 가. 민간위탁 사무명: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용역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 필요성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하수처리시설 운전 특성을 잘 파악하고 관련 기술력을 가진 전문업체의 운영관리 필요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전반
- 맨홀 및 중계펌프장 점검·보수 등

라. 민간위탁 시설 개요

- 설치목적: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방류 수역의 수질보전과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
- 소재지
 - 회화면 마구들4길 99, 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2009년 설치)
 - 거류면 거류로 516-10, 거류공공하수처리시설(2014년 설치)
- 시설규모: 2,200톤/일(회화 1,000톤/일, 거류 1,200톤/일)
- 사진대장



마. 민간위탁 기간: 2024. 3. 2. ~ 2027. 3. 1.(3년)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금2,918,940천 원(3년간)

- 연간 위탁 운영비: 금972,980천 원

(붙임1 참조,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 의뢰 산정)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2 참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 조作的 특성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위탁사유

- 가.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
- 나. 전문업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수처리 능력 극대화

5. 기대효과

- 가. 전문 관리대행업체 위탁을 통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 나. 민간기관의 전문 기술력 투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하수도서비스 질 개선

6. 향후 추진계획

- 2023. 12.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2023. 12. : 입찰공고
- 2024. 1.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2024. 2. : 계약 체결
- 2024. 3. : 위탁운영 실시

7. 참고사항

- 가. 관리대행 운영비 산정내역: 붙임 1
-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2
- 다. 관계법령: 참고

붙임1

연간 관리대행 운영비 산정내역

○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원가계산서

(단위 : 천원, 년)

구 분	금 액	비 고
인건비	403,409	7명(기술자 4명, 하수처리장치조작원 3명)
경비	352,149	
복리후생비	18,198	
안전보건관리비	2,802	
교육훈련비	1,173	
소모품비	6,438	
여비·교통·통신비	1,622	
도서인쇄비	238	
차량유지비	6,361	
약품비	56,618	정산비
폐기물처리비	66,494	정산비
전력비	85,965	정산비
수선유지비	95,633	정산비
시험분석비	5,168	정산비
조경관리비	5,438	정산비
순 원 가	755,557	인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	37,778	순원가 × 5%
이 윤	79,327	(순원가+일반관리비)× 10%
엔지니어링공제보험	11,865	정산비
부 가 가 치 세	88,453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엔지니어링공제보험)×10%
합 계	972,980	

○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연번	검토항목	검토결과	비고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축적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적정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는 환경부에서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득한 업체로 기술력 평가를 통한 업체 선택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적정
3	경제적 효율성	민간 전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운영으로 공무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따른 경제적 절감 및 운영 효율성 기대	적정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사업 공고 시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여 업체 선정 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위탁 업체 선정 가능	적정
5	성과측정의 용이성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 수질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됨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운영 관리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적정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환경부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관리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됨.	적정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 관리대행업의 전문기술력이 공급되는 운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적정
8	그밖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필요 사항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함	적정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